7.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7일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교육감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 상정일자 :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2년 12월 5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주진욱)

□ 제안이유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유재산의 관리 사무에 대한 별도 위임 근거 마련하고,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 주요내용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산의 관리 사무를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안 제5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재산의 기준 신설(안 제13조)
-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용어 정비(안 제4조,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안 제33조 및 제34조, 안 제36조)

3. 검토보고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노인만)

○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유재산의 관리 사무에 대한 별도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 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유재산의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칙을 통해 별도로 위임할 수 있도록 조항(제4항)을 신설

▸ **안 제4조에서,**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1항의 단서조항 신설 등)

▸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안 제13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기준(처분 및 취득 시)을 신설함

▸ **안 제19조부터 안 제24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및 안 제36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21.4.20.)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를 정비함

○ 검토 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음

▸ **특히**,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유재산의 관리 사무에 대해 규칙을 통해 별도 위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영장 등 개별 학교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공유재산에 대한 단순 업무지원을 넘어 전문인력이 배치된 기관에 총괄적으로 위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의 경우 직전 조례 개정 시('21. 7월) 법제처의 자치법규 관련 의견[3]에 따라 민간위원의 연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연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 부분의 경우 법령 개정('22. 4. 20.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3)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사례

- 법령에서 위원회 위원 등을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서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다면 연임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조례에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이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저촉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재산 기준(재산의 취득 및 처분 가격이나 토지 면적)을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으나 조례로 위임됨('23. 1. 1. 시행 예정)으로 인해 당장에는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위임 취지를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평균적인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금액의 변동 추이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